

연금저축신탁 (채권형) 제()호 약(구외환은행)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연금저축신탁(채권형) 제()호 약관(구외환은행)</p> <p>제13조(연금지급) ①~③ (생 략) ④ 연금지급좌수는 과세기간 개시일(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신청일)의 총잔고좌수를 잔여 연금지급 횟수로 좌수 분할하여 지급하며, 연금지급금액은 좌수에 지급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반영되어 변동됩니다.</p> <p>연금지급좌수 = {과세기간 개시일의 총 잔고좌수} ÷ {잔여 연금지급 회수}</p> <p>제20조(조세 및 비용)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합니다.</p>	<p>연금저축신탁(채권형) 제()호 약관</p> <p>제13조 (연금지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일 현재 신탁평가액을 잔여 연금지급 횟수(미지급연금횟수포함)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, 연금지급금액은 지급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.</u></p> <p>연금지급금액={연금지급일현재 신탁평가액} X {<u>미지급연금횟수/잔여연금지급횟수(미지급연금횟수포함)</u>}</p> <p>제20조(조세 및 비용) ①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.</u></p>	<p>약관명칭변경</p> <p>연금지급 문구수정, 연금지급시 미지급연금 포함</p> <p>문구 추가</p> <p>공정위 시정사항 반영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, 차입금의 이자,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, 신탁의 외부감사비용,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</p> <p>제21조(수수료)</p> <p>①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제34조(통지방법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</p>	<p>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<u>책임 있는</u>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, 차입금의 이자,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, 신탁의 외부감사비용,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</p> <p>제21조(수수료)</p> <p>①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<u>사전에 안내한</u>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<u>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</u>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제34조(통지방법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<u>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</u> 거래처의 책임있는</p>	<p>공정위 시정사항 반영</p> <p>공정위 시정사항 반영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거래처가 제2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제35조(약관의 변경등)</p> <p>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</p>	<p><u>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③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<u>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2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제35조(약관의 변경등)</p> <p>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다만,자본시장법 등 관</p>	<p>공정위 시정사항 반영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②~⑤ 생략</p> <p>⑥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관련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제37조(면책)</p> <p>①,② (생 략)</p> <p>③ 은행은 제29조의 신고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</p> 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(카드,비밀번호 등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</p>	<p><u>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</u></p> <p>②~⑤ (좌 동)</p> <p>⑥ 삭제</p> <p>제37조(면책)</p> <p>①,② (좌 동)</p> <p>③<u>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 29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(카드,비밀번호등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</p>	<p>공정위 시정사항 반영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.</p>	<p>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<u>사고,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</u> 다만,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	